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5장 27조로 구성 ... 각종 진흥책 담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계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관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증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인쇄에 관한 사항 및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쇄"라 함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쇄사"라 함은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10. "인쇄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인쇄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제2장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제4조(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과 인쇄문화산업(이하 "출판·인쇄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지원
4. 출판 및 인쇄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확대의 지원
7. 만화산업의 육성·지원
8. 서점·제본업 등의 지원
9. 그 밖에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인쇄문화산업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이를 "출판·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유통의 현대화지원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유통 현대화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출판·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인쇄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8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등

제9조(신고) ①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필증의 반납) ①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이 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